

# 2023년도 거점형 ·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FAQ자료

2023. 2.

## 2023년도 거점형·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FAQ 자료

### Q1. 사업방향

1-1 금년 거점형·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과 기존 스마트시티 챌린지,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23년 거점형,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기존 「스마트시티 챌린지」와 「지역거점 스마트시티」를 계승하여 도시규모와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.
- 기존 「스마트 시티 챌린지」 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~2022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.
- 기존 「지역거점 스마트시티」 사업은 개별 솔루션 중심의 사업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종합적인 스마트화와 관련된 도시공간 계획, 스마트 인프라 구축, 도시운영 플랫폼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- 금년 「거점형 스마트시티」 사업은 기존의 「스마트 챌린지」 사업방식과 「지역거점 스마트시티」의 사업방향을 계승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며,
  - 지역특화·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(이노베이션센터 등)를 구축하고, 거점에서 만들어진 혁신서비스를 광역차원에 보급·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.
- 금년 「강소형 스마트시티」 사업은 기후위기,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도시를 구축하여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.

## Q2. 신청자격

2-1 거점형 공모의 제외대상에 명시된 「유사목적 스마트시티 사업」에는 어느 사업이 포함되나요?

- 스마트시티 챌린지(2019~2021)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(2022)만 포함되며, 그 외 스마트 타운 챌린지,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2-2 민간기업 및 기관 등 컨소시엄 참여 구성원의 제한이 있나요?

- 대기업, 중소기업, 기관 등 컨소시엄 참여 구성원의 제한이 없습니다.

## Q3. 사업대상지

3-1 사업대상지 규모 기준이 있나요?

- 사업대상지 규모(면적, 인구 등)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, 국토부 사업방향 및 공모취지,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고, 총사업비, 민간·공공투자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업대상지 규모는 지자체 신청자격\*과는 무관합니다.

\* 거점형은 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이 응모 가능,  
강소형은 인구 100만 이하의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, 자치구인 경우 응모 가능

3-2

스마트도시계획에 사업대상지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스마트도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을 경우, 사업선정 후, 공모 내용이 반영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권고합니다.
  - 변경계획의 수립여부는 공모내용의 규모,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  -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, 사업선정 후, 공모 내용을 계획 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-3

사업대상지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기 수립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과 별건으로 본 공모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본 공모에 언급된 「실시계획」은 사업이행을 위한 세부사업 수행계획의 개념으로 스마트도시법 제14조에 따른 「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」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.
  - 다만, 기 수립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이행에 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-4

사업대상지 내외부에 타부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를 연계·고도화·확장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?

- 타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본 사업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를 고도화·확장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사업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중복투자 및 사업기간 준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,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Q4. 컨소시엄 구성

### 4-1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?

-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안부 예규 제236호) 제4조에 따라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사업자(보조사업자)를 선정하여야 합니다.
- 지방공기업법 제71조,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에 따라 본 사업 관련 지방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은 사업의 위탁대행 기관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### 4-2 컨소시엄은 언제 구성해야 하나요?

- 지자체-민간기업 간 컨소시엄을 미리 선정·구성하여 사업에 지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- 사업 선정 후 별도의 민간사업자 공모→ 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이 지연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  -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사전에 컨소시엄 공모를 실시하여 참여기업, 기관을 미리 선정하시고, 국토부 사업선정 전·후 즈음하여 협약을 체결하시길 권고 드립니다.
- \* 국토부 사업선정 전·후 시점에 상관없이 지자체-민간사업자가 체결하는 협약은 유효
- \*\* 단 사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지원대상 공모사업을 명확하게 특정하고, 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, 당해 컨소시엄과 관련된 모든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요망

## Q5. 실시계획 수립

### 5-1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.

- 사업기간(강소형 2년, 거점형 3년)을 고려했을 때 실시계획 조기수립과 연내 착공이 필요합니다.
- 현 추진일정 상 4월 사업선정→ 5월 중 국토부-지자체 협약체결 예정입니다.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해당 시점에 컨소시엄 사업자와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컨소시엄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, 외부 용역발주를 통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모서 제출 시 해당 수행일정을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### 5-2 실시계획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?

-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자체 수립하고, 국토부와 협의하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만, 국토부-지자체 협약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국토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
## Q6.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### 6-1 사업비의 성격

-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국보조금에 해당되며, 사업주체는 국고보조금 관련 제규정·지침을 준수하여 집행·정산하여야 합니다.

\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 제규정·지침 준수

### 6-2 사업비의 편성 및 사용범위

- 사업비는 거점형·강소형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, 실시계획 수립 등에 사용 가능하나,
  - 기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등에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.
  - 사업비의 편성, 집행,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(기재부 공고 제2021-87호)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6-3 지방비 현물 매칭이 가능한지요?

- 지방비는 지자체가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### 6-4 지방공사의 투자비용도 지방비 매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?

-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금은 별도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## 6-5 컨소시엄 사업자의 매칭은 어떤식으로 가능한가요?

-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은 현금 및 현금투자 모두 가능하며,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자체를 제외한 컨소시엄 사업자의 매칭은 추가적인 투자이며,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
## 6-6 컨소시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요?

-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직접 관련성 여부 등과 관련이 있으며, 이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, 성과물의 귀속여부 등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와 컨소시엄 사업자가 스스로 과세 여부를 검토한 후 관할 세무서(국세청 사전답변제도 등)에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-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비가 아니므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## 6-7 매입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정산하는 것이 인정되는지요?

- 지자체→ 컨소시엄 사업자에 교부 시 발생하는 매출부가세는 보조사업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,
- 컨소시엄 사업자→ 개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시 사후환급이 불가능한 매입부가세는 보조사업비에 포함이 가능\*합니다.

\*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 5항 참고

매입부가세를 보조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경우, 상위보조사업자(지자체) 승인 필요

## Q7. 사업성과의 귀속 및 운영

### 7-1 사업성과의 지자체 귀속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?

- 지자체와 컨소시엄 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, 성과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귀속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스마트도시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, 그 귀속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를 준용합니다.

### 7-2 사업종료 이후 위탁 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비용 부담은?

- 스마트도시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\*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\* ▲스마트도시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, ▲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 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, ▲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, ▲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,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

-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- 운영비용은 컨소시엄 사업계획에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지자체와 컨소시엄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.

## Q8. 기타

### 8-1 사업계획 제출 시 발표자료도 같이 제출하나요?

- 발표자료는 서면평가에 선정된 지자체가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-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세부계획은 서면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### 8-2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?

-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성과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.
  -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\*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포털 : [citydatahub.kr](http://citydatahub.kr)

### 8-3 스마트시티 기술 및 솔루션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?

- 국토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서 관련 정책, 기술동향,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스마트시티 기술 및 솔루션과 관련하여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또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\* 국토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: [smartcity.go.kr](http://smartcity.go.kr)
  - \*\* 스마트도시협회 : [smartcity.or.kr](http://smartcity.or.kr)
  - \*\*\*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: [smartcity.kaia.re.kr/smartcity/alliance/alliancelnit.do](http://smartcity.kaia.re.kr/smartcity/alliance/alliancelnit.do)

- ◆ 본 자료는 거점형·강소형 공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, 국토교통부 사업방향과 관련 법령·제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- ◆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석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,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*별첨 :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(기재부 공고 제2021-89호)**